

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
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
(전략작물육성팀)

1. 개정 이유

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
확화하는 내용으로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
개정(법률 제 20089호, 2024. 1. 23. 공포)됨에 따라 수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등
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(안 제3조)

- 기존 시행령에서 「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」 수립 사항 중 ‘쌀 가공품
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고 있었으나,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
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

나. 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(안 제16조의2)

-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,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·
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
-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
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‘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
및 생산자단체’로 규정

다. 쌀가공산업의 생산·유통·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(안 제19조)

-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만 규정
하던 것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·고시하는
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‘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쌀가공산업법 시행령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해외 전시회 참가
2. 쌀가공품의 해외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업
3.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·협조
4. 수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쌀가공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②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”란 제2조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.

제19조제5항 중 “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”를 “한국농수산물유통공

사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쌀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	<삭제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6조의2(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해외 전시회 참가 2. 쌀가공품의 해외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업 3.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·협조 4. 수출 관련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5. 그 밖에 쌀가공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

<u><신 설></u>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생략)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」에 따른 <u>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</u>에 위탁한다. ⑥ (생략) <u>부칙</u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	<u>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</u>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</u>”란 제2조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<u>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</u>를 말한다.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</u> <u>국농수산물유통공사</u> 또는 「<u>민</u> <u>법</u>」 제32조에 따라 <u>쌀가공산업</u> <u>육성</u>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에서 <u>농림축산식품부 장관</u>이 지 정·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게 ---. ⑥ (현행과 같음) <u>부칙</u>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-	---